

[별표 1]

◇ 주야간보호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

(기준:1일8시간이상~10시간미만 * 20일)

(2022.01.01.)

등급	수가	급여총액	보험공단 급여(85%)	본인부담 (15%)	개인부담 식,간식	수급자부담 총액(월)
1급	1,672,700	1,232,000	1,047,200	184,800	70,000	254,800
2급	1,486,800	1,141,400	970,190	171,210		241,210
3급	1,350,800	1,053,800	895,730	158,070		228,070
4급	1,244,900	1,025,000	871,250	153,750		223,750
5급	1,068,500	995,800	846,430	149,370		219,370
인지(12일)	597,600	597,480	507,960	89,640	42,000	131,640
경감 대상자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본인부담률 9%)	2급	102,730	70,000	172,730	
		3급	94,840		164,840	
		4급	92,250		162,250	
		5급	89,620		159,620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본인부담률 6%)	2급	68,480		138,480	
		3급	63,230		133,230	
		4급	61,500		131,500	
		5급	59,750		129,750	
	기초생활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0%)	100%	0		70,0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9%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기초수급권자, 기타 의료수급권자					0%	

※ 본인 일부부담 비율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 이용료 입금 계좌: 농협 351-0952-4556-43 (예금주:목련통합재가센터)